

## 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의 창업과 임원의 취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창업: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”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·외에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.
2. 겸직 : 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.
3. 휴직 :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수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4. “대학지원분”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, 비품, 연구기자재, 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. <개정 2020.09.01.>
5. 실험실창업 : 교원이 본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,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.
6. 실험실공장 :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“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” 제 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

**제2조1(기본원칙)** 교원의 창업 및 창업관련활동(이하 “창업 등”으로 한다)은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3조(심의기관)** 교원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교원창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창업 관련 정책수립
2. 교원의 창업활동의 승인여부 심사 및 평가
3. 창업기간의 조정·연장에 관한 심사
4. 창업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
5. 창업교원 및 창업회사의 기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원의 창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5조(창업절차)** ① 창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(과)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2.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1부

- 가. 창업교원의 이력사항
- 나. 창업동기 및 회사 개요
- 다. 기술 또는 연구개발계획과 일정
- 라. 시장성 및 사업효과
- 마.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계획
- 바. 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인적사항
- 사.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계획
- 아. 수업 및 학생지도 대책

- 3.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② 산학협력단은 교원의 창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한 후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09. 01>

**제6조(창업회사의 설립 및 형태)** ①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은 창업 준비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을 제외한 창업활동 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.

- ②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게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, 창업 교원은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겸직 및 휴직)** ① 이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 또는 임·직원의 활동으로 겸직 및 휴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겸직기간은 1회당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지배주주로 창업을 하여 창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년으로 할 수 있으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한다.
- ④ 창업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한다.

**제8조(창업승인의 취소)**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
- 2. 창업교원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3.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
- 4. 창업성도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
- 5.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- 6.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
- 7.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

중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2020.09.01.>

**제9조(창업지원)** ① 이 규정에 의해 창업을 하는 교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1. 실험실공장 설치
2. 연구실 사용
3. 창업보육센터 입주
4. 자금지원 알선
5. 대학 및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에 대한 사용
6.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창업교원의 기여사항)** ① 창업허가를 받은 교원과 우리 대학에서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 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.

②1 항의 기부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11조(창업 및 신고)** ① 총장으로부터 창업을 승인 받은 교원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(법인인감증명서)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한다.

② 제3자의 창업에 임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취임회사 등기부등본 1부.
2. 재직증명서 1부.

**제12조(사무관장)** 이 규정의 교원창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(기타 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1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시행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 또는 취임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겸직허가 신청서

신 청 인	대학	직 위		성 명	
전공분야		본 교 임용일		연락처	연구실: 휴대전화:
회사명				홈페이지	
회사주소				전화	
겸직예정 직책, 역할	직책			주된역할	
기술 또는 연구개발분야					
허가신청기간	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~ 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(    년    개월)				
대학지원 요청사항					
재정기여 방법					

『교원창업에 관한규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임원 겸직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①

- 붙 임 : 1. 벤처기업확인서  
 2. 벤처기업평가서  
 3. 사업계획서 1부(아래의 내용을 포함, 구체적으로 기술)  
 가. 창업동기 및 회사개요  
 나. 기술 또는 연구개발 계획과 일정  
 다. 시장성 및 사업효과  
 라. 소요자금 및 자금의 조달계획  
 마. 사업 참여자의 구성 및 역할과 인적사항  
 바.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 계획  
 사. 수업대책 및 학생지도  
 4.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 
 5.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위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업 임원취임을 추천합니다.

학과장(학부장) \_\_\_\_\_ (인)

학            장 \_\_\_\_\_ (인)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실험실 및 실험 기자재 사용승인 신청서

담 당	학과(부장)	학 장	처 장	부 총 장	총 장

신 청 인	대학	직 위	성 명
사용 실험실 명			
사용 기자재 명			
학생 교육, 실습 지장 여부			

※ 작성란 부족 시는 별지 붙임으로 작성할 것
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 청 인

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실험실공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		승인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		7일
실험실 개요	실험실명					
	책임교수(연구원) 성명					
	소재지					
실험실 공장 내용	실험실 총면적(㎡)		생산시설 면적(㎡)			
	제조시설명세					
사업 계획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대표자 주소					
	사업내용	업종	생산제품명	가동예정일		
		(산업분류: )				
변경 내용	구분	생산시설 면적(㎡)	제조시설 명세	대표자 성명	업종	생산 제품명
	변경 전					
	변경 후					
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(변경) 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 1부 2. 제조시설 배치도1부						
위와같이 실험실공장 설치(변경)를 승인합니다. ◎승인 조건 :						
년 월 일 경운대학교 총장						

## [별지 제4호 서식]

## 협 약 서

경운대학교 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\_\_\_\_\_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경운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겸직허가와 의무이행)** “갑”은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라 “을”의 벤처기업 임원( ) 겸직을 허가하며, “을”은 경운대학교 『교원창업에 관한 규정』 및 이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**제2조 (보상)** ① “을”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위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“갑”에게 보상한다.

매출총액의 \_\_\_\_\_%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\_\_\_\_\_%

②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보상의 기간과 시기는 \_\_\_\_\_로 한다.

**제3조(시설 및 장비, 기자재의 이용)** 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.

○○관 ○○○호,           m<sup>2</sup>

②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설이용료)** ①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m<sup>2</sup>당 \_\_\_\_\_원으로 한다.

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.

③ 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.

**제5조(공과금의 부담)**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,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“갑”의 청구에 의해 “을”이 부담한다.

② “갑”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“을”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권리의 양도, 전대 등의 금지)** “을”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.

**제7조(“을”의 의무)** ① “을”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“갑”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갖는다.

② “을”은 학교의 시설,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단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,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목적물의 구조변경 등)** ① “을”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“갑”의 사

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1. 시설물의 구조변경
  - 2.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
-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“을”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“갑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원상복구)** “을”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협약의 해지)** “을”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“갑”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1조(위약배상)**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“을”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.

**제12조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**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 다만, 상호협의를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**제13조(협약기간)**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검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검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.

**제 14조(특약사항)** \_\_\_\_\_.

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“갑” 경운대학교총장 (인)

“을” \_\_\_\_\_ (인)